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31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서천호 · 조은희 · 우재준

김은혜 · 김용태 · 엄태영

정성국 · 이만희 · 김민전

서지영 · 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농업시설·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4

조약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u>2031년 1</u> <u>2월 31일</u> -----. ----- ----- ----- -----.

1. · 2. (생략)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

2031년
12월 31일-----.

② -----

-----2031
년 12월 31일-----.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2031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

-----203

1년 12월 31일-----.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 ⑤ (생략)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
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
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
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
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2031년 12월 31일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
면) -----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의 25를 각각 <u>2026년 12월 31</u> 일까지 경감한다.	----- ----- <u>2031년 12월 31</u> 일-----.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